

서울고등법원 2020. 6. 16 선고 2019나2053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6. 16 선고 2019나205344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합555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변론 종결 2020. 5. 19.

판결 선고 2020. 6. 16.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합555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5. 22. 접수 제548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5. 22. 접수 제54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5. 22. 접수 제54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 아래에 "이행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나. 피고의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한 후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그러면 D은 다시 이 사건 각 상가를 양수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오로지 피고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D과 이 사건 각 상가를 D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나아가 D이 피고에게 이를 양도하는 것을 동의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등기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을 전제한 것인데, 제1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재오

판사박성윤

판사이의영

별지